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1. 3. 4. 2010 당 1814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8. 7. 24./2008. 12. 1./디자인등록 제 513945 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장식용 시트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 과 같다(이하, 원고의 등록디자인 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라 한다).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가) 출원일/출원공개/등록일/등록번호: 2006. 12. 22./2007. 1. 10./2008. 1. 22./디자인등록 제 477872 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가구용 문짝

다)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 제 1 항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전통모시

나) 형상: [별지 2] 제 2 항과 같다.

3) 비교대상디자인 3

가) 출처: 2006년 4월 발행된 RESERVE 1000 이라는 명칭의 간행물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직물지

다) 형상: [별지 2] 제 3 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0. 7. 1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 또는 유사할 뿐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 2, 3 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1. 3. 4. 2010 당 1814 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 3 으로부터 각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 5 조 제 2 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민사소송법 제 150 조 제 3 항)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5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 5 조 제 2 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 후 2800 판결](#) 참조).

나. 비교대상디자인 2, 3 과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가로와 세로의 줄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격자모양으로 교차하도록 그어져 있되, 줄의 두께와 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고 줄의 모양 또한 일정하지 않고 직선과 곡선이 섞여 있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의 와 비교대상디자인 3 의 에서 보는 것처럼, 위 비교대상디자인들 역시 가로와 세로의 줄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격자모양으로 교차하도록 그어져 있으며, 줄의 두께와 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고 줄의 모양도 직선과 곡선이 섞여 있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는 줄의 두께 차이가 더 심하고, 줄 사이의 간격도 더 촘촘하며,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줄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디자인 3 은 줄들이 대체로 가늘고 그 두께 차이가 비교적 적으며, 격자모양을 따르지 않고 줄 중간에서 빠져나온 줄들이 그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 3 이 모두 두께, 간격 및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가로와 세로의 줄들이 격자모양으로 교차하도록

그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위와 같은 공통점이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위 각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이루는 지배적인 형상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반하여, 줄들의 두께, 간격 및 모양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만으로는 그 전체적인 디자인의 형상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줄들의 두께, 간격 및 모양을 달리하는 것은 통상의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2 또는 3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교대상디자인 2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이므로 그 물품의 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디자인을 창작할 때 참작할 수 있고, 비교대상디자인 3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직물지는 가구, 문, 벽 등의 표면을 장식하기 위한 마감재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장식용 시트와 유사한 물품이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 또는 3으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5 조 제 2 항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5 조 제 2 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종이, 합성수지필름, 에폭시코팅제 또는 PVC 등이 사용가능한 것임. 2. 본원 디자인에 표현된 무늬모양은 상, 하, 좌, 우로 스크린 인쇄 및 Frost 가공 처리하여 연속 반복되는 것임. 3. 표면에 표현된 색상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4. 본 물품은 가구 및 도어 및 아트월 등의 표면장식 마감재 등으로 벽, 바닥 등의 인테리어 공간에 사용하는 것임. 5. 본원 디자인은 일반용 시트, 유리, 인테리어 필름, 접합유리, 거울, 철판 등의 인테리어 마감재의 배면 또는 전면에 사용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반복적으로 조합하여 디자인화한 시트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표면도]

[별지 2]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가구용 문짝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천연목재 또는 고밀도섬유판재(HDF : High Density fiber board) 내지 중밀도섬유판재(MDF : Medium Density Fiber board)의 가공 인조목재, 합성수지재, 알루미늄재, 금속재임. 2.

본원디자인은 사용대상물에 따라 그 크기와 두께 등을 대응 제작하여 가구의 장식장, 장롱 내지 붙박이장, 진열장, 서랍장 등과, 주방가구(싱크대)의 문짝은 물론 후레쉬 도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3. 본원디자인은 정면도에 표현되어 도시된 바와 같이, 본원디자인의 바탕 배경무늬는 규칙적이면서 자유롭게 선을 그리는 빗살무늬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이루어진 것임. 4. 본원 디자인의 바탕배경 무늬는 빗살무늬로 하여 동물,식물,곤충 등의 이미지를 참고도 3 과 같이 삽입할 수 있음. 5. 참고도 1은 도면 중 정면도에 표기된 AA//BB//CC//DD 선을 따라 서로 교차 면의 문양을 부분 발취하여 확대한 도면이고, 참고도 2 내지 8은 본원디자인에 따른 문양이 다양한 형태로 재단 가공된 문짝 정면의 외측 표면에 선택된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인쇄되어 표현되므로 간단하게 외적인 다른 미감 연출이 가능할 수 있음을 각기 다른 실시 상태를 예시한 도면들이며, 참고도 9 내지 10은 본원디자인이 가구의 장롱 내지 붙박이장의 문짝으로 사용된 상태를 개략적으로 예시한 사시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가구용 문짝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정면도]

[배면도][좌측면도][평면도]

[참고도][참고도][참고도][참고도][참고도][참고도][참고도][참고도]

[참고도][참고도]

2. 비교대상디자인 2

3. 비교대상디자인 3

<끝>